

#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# 검 토 보 고

### 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038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0. 10. 16.
4. 회부일자 : 2020. 10. 26.

### II. 제안이유

-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(안)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.

### III. 주요내용

- 주요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

(단위: 천원)

기금명	수 입 계 획			지 출 계 획		
	항 목	'20년 수입액		항 목	'20년 지출액	
		기정	변경		기정	변경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	합 계	63,370,821	62,712,300	합 계	63,370,821	62,712,300
	전입금	17,229,725	12,279,104	고유목적 사업비	28,510,300	4,546,602
	예치금회수	45,558,289	49,610,611	예치금	34,860,521	58,165,698
	이자수입	582,807	822,585			

### IV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변경계획안은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038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계획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‘지방기금법’) 제8조1)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.
-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이 20%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(지방기금법 제11조2)).
- 이에 금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‘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’의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‘기관운영관리’의 지출금액 285억 1천만원을

---

1)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 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2)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45억 4천 6백만원으로 239억 6천 4백만원 감액하였고(△ 84.1%),

‘예비비 및 기타’(예치금) 지출금액 348억 6천 1백만원을 581억 6천 6백만원으로 233억 5백만원(66.9%) 증액하였는바, 이와 같은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변경은 지방기금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.

[표-1]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변경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/단위/세부사업	변경 (A)	당초 (B)	증감 (A-B)	증감사유
수 입 합 계	50,433	46,141	4,292	
자 체 수 입	822	583	239	
이 자 수 입	822	583	239	예치금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
기 타	74,991	80,601	△5,610	
예 치 금 회 수	49,611	45,558	4,053	2019년도 기금 결산 결과 반영
내 부 거 래	12,279	17,230	△4,951	
전 입 금	12,279	17,230	△4,951	
지 출 합 계	62,712	63,371	△659	
예 비 비 및 기 타	58,166	34,861	23,305	
예 비 비 및 기 타	58,166	34,861	23,305	
내 부 유 보 금 ( 예 치 금 )	58,166	34,861	23,305	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금고예치금 증가
기 관 운 영 관 리	4,546	28,510	△23,964	
교 육 행 정 기 관 시 설	4,546	28,510	△23,964	
본 청 시 설 관 리 ( 신 청 사 건 립 )	4,546	28,510	△23,964	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
직 속 기 관 시 설 관 리 ( 연 수 원 건 립 )	0	0	0	

- 이처럼 ‘기관운영관리’의 지출금액을 대폭 감액한 것은 서울시 경관심의 및 용산구의 실시계획인가의 지연으로 인해 설계 등 ‘본청시설관리사업’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.

또한 예치금의 증액은 당초 계획된 강남구 도곡동 토지 매각의 연기 (△60억)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감액 및 전년도 미적립액 등 10억 4천 9백만원이 증가됨에 따른 이자수입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바,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변경안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표-2]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실시계획인가 경과

일시	내용
2019. 12. 30.	○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 공문 발송 (서울시교육청 → 용산구청 도시계획과)
2020. 1. 4.	○ 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) 실시계획인가 도서 보완 요청 공문 발송 (용산구청 도시계획과 → 서울시교육청) - 공공시설 조서 및 도면, 경관심의 등 관련절차 이행결과 반영 설계도서
2020. 5. 15.	○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도서 보완 제출 공문 발송 (서울시교육청 → 용산구청 도시계획과)
2020. 6. 9.	○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예정 알림 공문발송 (용산구청 도시계획과 → 서울시교육청)
2020. 6. 9.	○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관한 보완요청 (용산구청 도시계획과 → 서울시교육청) - 용산구청 건축과 보완요청 사항 등 반영 요청
2020. 7. 1.	○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관한 보완요청(추가) (용산구청 도시계획과 → 서울시교육청) -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추가 보완요청 사항 등 반영 요청
2020. 7. 6.	○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도서 보완 제출 공문 발송 (서울시교육청 → 용산구청 도시계획과)
2020. 7. 15.	○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관한 보완요청(2차 추가) (용산구청 도시계획과 → 서울시교육청) -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(2차)추가 보완요청 사항 등 반영 요청
2020. 7. 20.	○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도서 (추가)보완 제출 공문 발송 (서울시교육청 → 용산구청 도시계획과)
2020. 8. 10.	○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청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정 알림 (용산구청 도시계획과 → 서울시교육청)
2020. 8. 13.	○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(서울시보 고시)

- 이상으로 「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 
거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 
니다.

# 관 계 법 령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0. 6. 9.] [법률 제17388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